의안번호	2200551
의 뢰 인	고동진 의원
회 답 일	2024. 7. 8.
추계번호	24B0955

디지털포용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의 수립, 민간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수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8,000만원(연평균 3,6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	50	0	0	50	0	100	20
민간협의체 구성·운영(안 제8조)	16	16	16	16	16	80	16
계	66	16	16	66	16	180	36

주: 1. 향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단가의 증감, 실제 민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6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정부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제3항) 1. 디지털포용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및 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5.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서비스・제품 등의 개발・보급・표준화・수출지원 6. 디지털포용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7.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디지털포용의 실태와 정책 성과 분석 9.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10.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11.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운용 12.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	
3	안 제7조(디지털포용 시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8조(민간의 정책 참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기관등은 포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 분야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제2항)	
5	안 제9조(실태조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제1항) 1. 정보격차 수준 및 현황 2.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수준 및 통계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보장 현황 및 통계 4. 디지털포용 정책의 성과와 수준에 관한 현황 5.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0조(디지털포용 영향평가)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신규로 도입・개발・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자체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개별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 할 수 있음(제2항) 1.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2. 국가기관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3.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재량규정
7	안 제11조(전문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제1항) 1. 디지털포용 정책의 수립 및 개발의 지원 2.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3. 디지털포용 관련 국내외 동향의 조사 및 분석 4. 디지털포용 관련 법・제도 연구 5. 디지털포용 정책 및 사업의 추진 및 조사・분석・평가 6.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7.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교육 8. 제10조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업무 지원 9. 제13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운영・지원 10. 제18조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운영 지원 11. 제20조제4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검증 1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디지털포용 정책과 관련하여 지능정보사회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능정보사회원에 출연할 수 있음(제2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2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제1항) 1.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교안(敎案)·교구(敎具)·교재의 개발·보급 2.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장비의 설치 3. 디지털역량교육 전문인력의 발굴·지원 4.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조사·보급 및 연구 5.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의 홍보 및 포상 6. 그 밖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확산에 따른 다양한 디지털 문제에 대한 해결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제3항)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재량규정
9	안 제13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0	안 제14조(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 함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1	안 제15조(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련 분야의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음(제2항) 1. 디지털 기반 일자리, 직무 등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 2.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및 취업ㆍ창업진로상담 3. 디지털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ㆍ창업지원ㆍ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를 위하여 민간 기업의 자발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12	안 제1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함(제1항)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의무규정
13	안 제18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16조제1항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해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함(제2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4	안 제21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음(제1항)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재량규정
15	안 제22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지능정보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6	안 제23조(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표준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용편의를 향상시킨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이하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라 한다)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1.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7	안 제24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지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사업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8	안 제25조(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수출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수출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인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1.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수출을 추진하는 자 2. 수출진흥을 위한 자문·지도·대외홍보·전시·연수 또는 상담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3. 국내외에서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등과 관련한 전시장을 설치·운영하거나 전시장에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등을 출품하는 자 4.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등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자	
19	안 제26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사업자에게 디지털포용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행정적·기술적·관리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0	안 제27조(재원의 조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1	안 제28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22	안 제29조(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3	안 제30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환·기술협력 등 국제협력 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과 관련된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등의 국제기준의 수립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음(제3항) 1.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4	안 제31조(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포용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9조(실태조사 등)	-	현행 사업 존재 - 제정안 시행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를 알 수 없음
2	안 제12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	
3	안 제13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	
4	안 제14조(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5	안 제15조(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	
6	안 제1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	
7	안 제18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	-	
8	안 제21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의 지원)	-	
9	안 제22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	
10	안 제23조(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표준화)	-	
11	안 제24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지정 등)	-	
12	안 제25조(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수출지원)	-	
13	안 제28조(포상)	-	
14	안 제30조(국제협력)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5	안 제7조(디지털포용 시행계획)	×	미대상 - 안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어,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16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사회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
17	안 제10조(디지털포용 영향평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 시행으로 디지털포용 영향평가가 신규 도입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현 시점에서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에 필요한 평가지표 마련 및 평가 방법 등 영향평가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가 부재하고, 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 주기 등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계에 한계가 있음
18	안 제11조(전문기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제정안의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나, 향후 제정안 시행으로 인해 확대될 출연사업의 종류 및 내용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
19	안 제26조(전문인력 양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포용 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경우 그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양성 인력의 기준, 대상, 지원 내용 등을 알 수 없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20	안 제27조(재원의 조달)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와 관련한 일반적인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
21	안 제29조(세제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접근성 품질 인증을 받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해당 법률에서 정할 감면 관련 규정을 알 수 없음
22	안 제31조(위임 및 위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 관련 경비가 소요될 수 있지만, 제정안은 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위탁 대상 기관 및 위탁 업무 등을 알 수 없음
23	안 제6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4	안 제8조(민간의 정책 참여 등)	○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표 2]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

(단위: 백만원)

<table>
<tr><th>조·항(조제목)</th><th>현행 사업(2024년)</th></tr>
<tr><td>안 제9조(실태조사 등)</td><td>
<table>
<tr><th>사업</th><th>개요</th><th>’24예산</th></tr>
<tr><td>디지털격차해소 기반조성</td><td>o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 300
– 모바일앱, 키오스크 등 정보접근성 실태를 파악하여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o 웹접근성 실태조사 : 200
– 국내 웹 접근성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 제고
o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 582
– 국내 웹사이트 현황을 계량적으로 측정, 평가, 분석하여 관련 정책 기초자료 산출</td><td>1,082</td></tr>
</table>
</td></tr>
<tr><td>안 제12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td><td>
<table>
<tr><th>사업</th><th>개요</th><th>’24예산</th></tr>
<tr><td>디지털역량강화 교육</td><td>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없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해 디지털 기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교육 추진
–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td><td>1,300</td></tr>
</table>
</td></tr>
<tr><td>안 제13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td><td>
<table>
<tr><th>사업</th><th>개요</th><th>’24예산</th></tr>
<tr><td>디지털역량강화 교육</td><td>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없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해 디지털 기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교육 추진
– 디지털 교육센터 운영</td><td>27,936</td></tr>
</table>
</td></tr>
<tr><td>안 제14조(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td><td>
<table>
<tr><th>사업</th><th>개요</th><th>’24예산</th></tr>
<tr><td>디지털역량강화 교육</td><td>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없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해 디지털 기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교육 추진
– 디지털역량 교육 통합플랫폼 운영
– 키오스크 UI플랫폼 구축·운영</td><td>3,518</td></tr>
<tr><td>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구축</td><td>국가기관등에서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객관성, 신뢰성이 검증된 국가지식정보를 연계·활용하는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국민의 지식역량 제고</td><td>1,947</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조·항(조제목)</th><th>현행 사업(2024년)</th></tr>
<tr><td>안 제15조(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td><td>
<table>
<tr><th>사업</th><th>개요</th><th>’24예산</th></tr>
<tr><td>디지털역량강화 교육</td><td>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없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해 디지털 기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교육 추진
- 디지털 취업연계 교육
- 장애인 집한 정보화교육
- 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
- 장애인 정보화상담실 운영</td><td>3,706</td></tr>
</table>
</td></tr>
<tr><td>안 제1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td><td>
<table>
<tr><th>사업</th><th>개요</th><th>’24예산</th></tr>
<tr><td>디지털역량강화 교육</td><td>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없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해 디지털 기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교육 추진
- 디지털 취업연계 교육
- 장애인 집한 정보화교육
- 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
- 장애인 정보화상담실 운영</td><td>3,706</td></tr>
</table>
</td></tr>
<tr><td>안 제18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td><td>
<table>
<tr><th>사업</th><th>개요</th><th>’24예산</th></tr>
<tr><td>디지털격차해소 기반조성</td><td>-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운영
- 디지털 포용 제품·서비스 실증</td><td>4,963</td></tr>
<tr><td>ICT융합디지털포용기술개발</td><td>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가 신체·인지적 제약을 극복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경제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ICT 융합 기반 디지털포용 기술·서비스 발굴</td><td>1,200</td></tr>
</table>
</td></tr>
<tr><td>안 제21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의 지원)</td><td>
<table>
<tr><th>사업</th><th>개요</th><th>’24예산</th></tr>
<tr><td>디지털격차해소 기반조성</td><td>-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운영
- 디지털 포용 제품·서비스 실증</td><td>4,963</td></tr>
<tr><td>ICT융합디지털포용기술개발</td><td>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가 신체·인지적 제약을 극복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경제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ICT 융합 기반 디지털포용 기술·서비스 발굴</td><td>1,200</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조·항(조제목)</th><th>현행 사업(2024년)</th></tr>
<tr><td>안 제22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td><td>
<table>
<tr><th>사업</th><th>개요</th><th>’24예산</th></tr>
<tr><td>농어촌주민통신접근권보장</td><td>도시와 농촌간 통신 인프라 격차 해소</td><td>1,385</td></tr>
</table>
</td></tr>
<tr><td>안 제23조(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표준화)</td><td>
<table>
<tr><th>사업</th><th>개요</th><th>’24예산</th></tr>
<tr><td>디지털격차해소 기반조성</td><td>-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운영
- 디지털 포용 제품·서비스 실증</td><td>4,963</td></tr>
<tr><td>ICT융합디지털포용기술개발</td><td>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가 신체·인지적 제약을 극복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경제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ICT 융합 기반 디지털포용 기술·서비스 발굴</td><td>1,200</td></tr>
</table>
</td></tr>
<tr><td>안 제24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지정 등)</td><td>
<table>
<tr><th>사업</th><th>개요</th><th>’24예산</th></tr>
<tr><td>디지털격차해소 기반조성</td><td>- 디지털 포용 제품·서비스 실증
- ICT 융합 디지털포용 기술 개발</td><td>1,950</td></tr>
<tr><td>ICT융합디지털포용기술개발</td><td>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가 신체·인지적 제약을 극복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경제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ICT 융합 기반 디지털포용 기술·서비스 발굴</td><td>1,200</td></tr>
</table>
</td></tr>
<tr><td>안 제25조(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수출지원)</td><td>
<table>
<tr><th>사업</th><th>개요</th><th>’24예산</th></tr>
<tr><td>디지털격차해소 기반조성</td><td>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업체 해외 수출 지원</td><td>100</td></tr>
</table>
</td></tr>
<tr><td>안 제28조(포상)</td><td>
<table>
<tr><th>사업</th><th>개요</th><th>’24예산</th></tr>
<tr><td>건전정보문화조성</td><td>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문화의 달 지원 (내내역 사업으로 ‘정보문화의 달 운영’)</td><td>256</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조·항(조제목)</th><th>현행 사업(2024년)</th></tr>
<tr><td>안 제30조(국제협력)</td><td>
<table>
<tr><th>사업</th><th>개요</th><th>’24예산</th></tr>
<tr><td>개도국 정보이용환경개선사업</td><td>개도국의 디지털 접근 환경 개선을 위해 ICT 교육장, ICT 라운지, 영상회의실 등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ICT 콘텐츠를 제공
-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운영 : 3,496
해외 IT정책결정자 협력 채널 : 400</td><td>3,896</td></tr>
<tr><td>국제기구를 통한 정보화분야 해외진출 지원</td><td>주요 국제기구·다자개발은행 협력 기반을 통해 수요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우리 ICT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서의 글로벌 위상 강화</td><td>194</td></tr>
</table>
</td></tr>
</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본 추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6조의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 수립, 안 제8조의 민간의 정책 참여 등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기본계획 수립) 제정안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므로, 추계기간 중 2026년과 2029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민간의 정책 참여 등) 제정안에 따라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안 제6조)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정부가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1억원(연평균 2,000만원)으로 추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사회의 국가발전 전략연구' 사업(2024년 예산 10억 1,300만원)을 통해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5,000만원

[표 3]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	50	-	-	50	-	100	20

주: 향후 용역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민간협의체 구성·운영(안 제8조)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8,000만원(연평균 1,600만원)으로 추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사 사례인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당연직 위원 6명, 민간 위촉위원 13명)를 참고하여,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 연 4회 회의를 개최[1]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30만원[2]씩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1)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최근 1년(2022.7월~2023.6월) 간 4회 출석 회의를 개최하였음
2)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표 4] 민간협의체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민간협의체 구성·운영	16	16	16	16	16	80	16

주: 향후 실제 민간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현황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민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실제 정책추진 방식에 따라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